

# 순 천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283호 2020. 4. 16. (목)

## 입 법 예 고

순천시 공고 제2020-783호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순천시 공고 제2020-795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순천시 공고 제2020-799호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3

순천시 공고 제2020-810호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순천시 공고 제2020-816호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9

순천시 공고 제2020-821호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32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공고 제2020-7호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8

## 훈 령

순천시 훈령 제301호 순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 44

## 고 시

순천시 고시 제2020-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동천) ..... 52

순천시 고시 제2020-70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53

순천시 고시 제2020-71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상비마을 진입도로) ..... 54

순천시 고시 제2020-72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곡동) ... 56

순천시 고시 제2020-73호 도로명주소 고시 (신규·폐지) ..... 57

순천시 낙안면 고시 제2020-3호 하천점용 허가고시 ..... 62

순천시 주암면 고시 제2020-1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주암천) ..... 63

순천시 주암면 고시 제2020-2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주암천) ..... 64

순천시 주암면 고시 제2020-3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주암천) ..... 65

순천시 주암면 고시 제2020-4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주암천) ..... 66

회 람										
-----	--	--	--	--	--	--	--	--	--	--

발행 : 순천시

편집 : 홍보실 (749-3477, FAX : 749-4625)

# 입 법 예 고

순천시 공고 제 2020-783호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 순 천 시 장

###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 정 취 지

- 택시감차 실적 초과 달성 시 신규 택시 운송 사업을 면허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 주 요 내 용

- 조례명  
(현행)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  
(개정)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조례
- 조문개정 : 제1조(목적)
- 조문신설 :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근거

#### 3. 입법예고기간 : 2020. 4. 16. ~ 5. 5. (20일간)

#### 4. 의 견 제 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5. 5. 까지 순천시장(교통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61-749-5901, FAX 749-4671
- (주 소)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4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5조제2항” 을 “제15조제4항” 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신규면허) 순천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u>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u>」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 ----- ----- ----- <u>15조제4항</u>----- -----.</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3조(신규면허) 순천시장은 「<u>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u>」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한다.</p>

순천시 공고 제2020-795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 순 천 시 장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개)정취지

- 2020년 6월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단지 지역에 통반을 신설해 원활한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

#### 2. 주요내용

- [별표 2] 매곡동 관할구역
  - 3개 통 및 11개 반 신설 : 서한이다음 아파트 1, 2단지
    - ※ 16통(4반), 17통(4반), 18통(3반) 신설
  - 서한이다음 아파트단지에 포함된 기존 11통 2반의 일부 관할구역 제외
- [별표 2] 삼산동 관할구역
  - 2개통, 11개 반 신설 : e편한세상 아파트 1, 2단지
    - ※ 42통(5반), 43통(6반) 신설
  - e편한세상 아파트단지에 포함된 기존 10통 1반의 일부 관할구역 제외

#### 3.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6. ~ 2020. 5. 6. (20일간)

####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순천시장(자치혁신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631, FAX : 061-749-4640)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이동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매곡동 11통 2반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하고, 16통, 17통, 18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매곡동	11	1	현행과 같음
		2	<u>443, 443-1~443-13, 444, 445, 446-4~446-11, 449, 449-3, 450-1</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	⋮	⋮
<신설>	<u>16</u>	<u>1</u>	<u>매곡동 서한이다음 아파트 101동</u>
		<u>2</u>	<u>102동</u>
		<u>3</u>	<u>103동, 상가동</u>
		<u>4</u>	<u>104동</u>
<신설>	<u>17</u>	<u>1</u>	<u>매곡동 서한이다음 아파트 105동</u>
		<u>2</u>	<u>106동</u>
		<u>3</u>	<u>107동</u>
		<u>4</u>	<u>108동</u>
<신설>	<u>18</u>	<u>1</u>	<u>매곡동 서한이다음 아파트 201동</u>
		<u>2</u>	<u>202동</u>
		<u>3</u>	<u>203동</u>
⋮	⋮	⋮	⋮

별표 2 중 삼산동 10통 1반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하고, 42통, 43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삼산동	10	1	용당동 581-1~585-3, 650~707(681-1제외), 719~720, 743-6~743-24
		2	현행과 같음
∴	∴	∴	∴
<신설>	42	1	용당동 e편한세상 아파트 101동, 상가동
		2	102동
		3	103동
		4	104동
		5	105동
<신설>	43	1	용당동 e편한세상 아파트 106동
		2	107동
		3	108동
		4	109동
		5	110동
		6	201동, 202동
∴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별표 2]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매곡동	11	1	현행과 같음	매곡동	11	1	현행과 같음
		2	443, 443-1~443-13, 444, 445, 446-4~446-11, 449, 449-3, 450-1, 446, 463, 463-12, 463-19			2	443, 443-1~443-13, 444, 445, 446-4~446-11, 449, 449-3, 450-1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	⋮	⋮	⋮	⋮	⋮	⋮
⋮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삼산동	10	1	용당동 581-1~585-3, 650~720, 743-6~743-24	삼산동	10	1	용당동 581-1~585-3, 650~707(681-1제외), 719~720, 743-6~743-24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	⋮	⋮	⋮	⋮	⋮	⋮
⋮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매곡동	16	1	매곡동 서한이다음 아파트 101동	매곡동	16	1	매곡동 서한이다음 아파트 101동
		2	102동			2	102동
		3	103동, 상가동			3	103동, 상가동
		4	104동			4	104동
		⋮	⋮			⋮	⋮
<신설>	17	1	매곡동 서한이다음 아파트 105동	<신설>	17	1	매곡동 서한이다음 아파트 105동
		2	106동			2	106동
		3	107동			3	107동
		4	108동			4	108동
<신설>	18	1	매곡동 서한이다음 아파트 201동	<신설>	18	1	매곡동 서한이다음 아파트 201동
		2	202동			2	202동
		3	203동			3	203동
⋮	⋮	⋮	⋮	⋮	⋮	⋮	⋮
⋮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용당동	42	1	용당동 e편한세상 아파트 101동, 상가동	용당동	42	1	용당동 e편한세상 아파트 101동, 상가동
		2	102동			2	102동
		3	103동			3	103동
		4	104동			4	104동
		5	105동			5	105동
<신설>	43	1	용당동 e편한세상 아파트 106동	<신설>	43	1	용당동 e편한세상 아파트 106동
		2	107동			2	107동
		3	108동			3	108동
		4	109동			4	109동
		5	110동			5	110동
		6	201동, 202동			6	201동, 202동
⋮	⋮	⋮	⋮	⋮	⋮	⋮	⋮
⋮				⋮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3조
  - 이·통·반장 임명(5개 통, 22개 반)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을 바탕으로 함
- 원활한 이·통·반 관리를 위한 이·통·반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통반장 증감 현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이통장	850	855	5	
반 장	2,329	2,351	22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110,250	-12,250	-24,500	-24,500	-24,500	-24,500
세입(a)						
세출(b)	110,250	12,250	24,500	24,500	24,500	24,5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110,250	12,250	24,500	24,500	24,500	24,500
국 비						
도 비						
시 비	110,250	12,250	24,500	24,500	24,500	24,500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 24,500천원/년 (통장 5명, 반장 22명)
- 산출기초
  - 통장 기본수당 : 300,000원×12월×5명=18,000,000원
  - 통장 상여금 : 300,000원×2회(설, 추석)×5명=3,000,000원
  - 통장 회의참석 수당 : 20,000원×2회(월)×12월×5명=2,400,000원
  - 반장 수당 : 25,000원×2회(설, 추석)×22명=1,100,000원

##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 8.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혁신과 과장 조태훈(☎749-5453)
- 자치행정팀장 양영만(☎749-5625)

순천시 공고 제2020-799호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 순 천 시 장

###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제(개)정취지

-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 주민제안사업 지원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서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로 개정

#### 2. 주요내용

- 제6조(보수) 조문 수정 및 별표 개정
  - 센터 직원 보수 지급 체계 명문화 및 [별표 2] 직원 보수 지급 기준 개정  
(현행) ~급 상당 → (개정) ~급 ~호봉 상당액
- 제10조(선정심사 및 통지) 조문 수정
  - 주민제안사업 지원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심사 위원회 명칭 개정  
(현행)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 (개정)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

3.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6. ~ 2020. 5. 6. (20일간)

#### 4. 의견제출

-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청(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순천시청 도시재생과
  - (전화) 061-749-3040, (팩스) 061-749-4615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붙임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붙임 】

##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0조” 를 “제11조”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 을 제 “제12조제1항” 으로 한다.

제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
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제8조 중 “제16조” 를 “제17조”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를 “조례 제8조에 따른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 보수 등 지급기준

지급항목 \ 직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
월기본급	지방공무원 5급 10호봉 상당액	지방공무원 6급 10호봉 상당액	지방공무원 7급 10호봉 상당액	지방공무원 8급 10호봉 상당액
정근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정액급식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초과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단가로 하되 월 15시간 이내			
근무지내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제1항에 준하여 지급하되, 월 1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교육훈련 등 참석보상금 (근무지내 교육 훈련 등 제외)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①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p>	<p>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① ----- ----- ----- 제11조----- ----- -----.</p>
<p>제3조(센터직원의 채용)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p>	<p>제3조(센터직원의 채용) ① -- 제12조제1항-----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보수) ① (생략) <u>&lt;신 설&gt;</u>     <u>&lt;신 설&gt;</u></p>	<p>제6조(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 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p>
<p>제8조(주민제안사업)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순천시 도시재생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p>	<p>제8조(주민제안사업) ----- 제17조에----- ----- ----- ----- -----. 1. ~ 5. (생략)</p>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선정심사 및 통지) ① 제안사업 지원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심사는 <u>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만들기 위원회</u> (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수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0조(선정심사 및 통지) ① ----- ----- <u>조례 제8조에 따른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u> -----.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2] 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 보수 등 지급기준					[별표 2] 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 보수 등 지급기준				
직 지급항목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	직 지급항목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
월기본급	지방공 무원 5급 봉급 상당액	지방공 무원 6급 봉급 상당액	지방공 무원 7급 봉급 상당액	지방공 무원 8급 봉급 상당액	월기본급	지방공 무원 5급 10호봉 상당액	지방공 무원 6급 10호봉 상당액	지방공 무원 7급 10호봉 상당액	지방공 무원 8급 10호봉 상당액
정근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정근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정액급식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정액급식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초과근무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단가로 하되 월 15시간 이내				초과근무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단가로 하되 월 15시간 이내			
근무지내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제1항에 준 하여 지급하되, 월 100,000원을 초과 하지 못함				근무지내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제1항에 준 하여 지급하되, 월 100,000원을 초과 하지 못함			
교육훈련 등 참석보상 금 (근무지내 교육 훈련 등 제외)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				교육훈련 등 참석보상 금 (근무지내 교육 훈련 등 제외)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순천시 공고 제2020-810호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 순 천 시 장

###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사유

-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해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사업(제1조 ~ 제4조)
- 운영시설, 운영 및 휴관, 이용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 제12조)

- 운영시설 : 체육관, 체력단련실, 탁구장, 다목적실, 부대시설 등
- 운영시간 : 평일 06:00~22:00, 토·일요일 06:00~18:00(매주 1,3주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13조 ~ 제18조)

- 위탁관리/기간 :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5년 이내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부시장) 1명 포함 10명 이내
  - 시 공무원(5급이상), 시의원(2명), 체육단체 장 또는 관리자, 체육회계경영 등 분야 전문가

#### 3.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6. ~ 2020. 5. 6. (20일간)

#### 4. 의견제출

○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순천시장(체육진흥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651, FAX : 061-749-476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1부. 끝.

##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순천시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란 체력단련, 개인연습, 경기연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유아 : 만6세 이하인 미취학 아동
  - 나.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사람
  - 다.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라. 일반 :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
  - 마. 경로 : 만65세 이상인 사람
2.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입장"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이 조례에서 정한 소정의 이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고 회원권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국민체육센터의 명칭은 “순천시 팔마국민체육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순천시 팔마로 333(연향동)에 둔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체육진흥 육성 사업
2.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체육관, 체력단련실, 탁구장, 다목적실 등
2. 부대시설 :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

**제6조(운영 및 휴관)**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센터를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06:00 ~ 22:00
2. 토·일요일 06:00 ~ 18:00
- ③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3.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입한 후 이용해야 한다.  
 ② 이용허가는 이용권을 교부받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8조(이용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이용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센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공중에 위대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3. 음주 등 체육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이용료)** ① 센터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이용료는 이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이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이용인원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요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센터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사용개시일 전에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적이 사유로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수탁자 선정과 위탁기간의 연장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 소속 체육관련 부서 5급 이상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체육단체 및 체육관련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4. 체육·회계·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탁협약 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관리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을 위해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프로그램		기 준	월 이용료(강습)	자유이용	일일이용	비 고
배드민턴	일 반	1개월	50,000 ~ 100,000	30,000	3,000	강습시간 연령대 및 수준별 요금 적의조정
	청소년·어린이	1개월		20,000	2,000	
	어린이	1개월		15,000	1,500	
탁 구	일 반	1개월	20,000 ~ 50,000	40,000	4,000	
	청소년	1개월		30,000	3,000	
	어린이	1개월		20,000	2,000	
택 견	일 반	1개월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청소년	1개월				
	어린이	1개월				
체력단련장(헬스장)		1개월	해당없음	20,000	2,000	
필라테스, 라인댄스, 줌바방송댄스 등		1개월	20,000 ~ 6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프로그램 과목, 시간 및 수준별 요금 적의 조정
다목적체육관 (전용이용) 시간당		체육행사	해당없음	20,000	해당없음	냉난방사용시 사용료 30% 가산
		일반행사	해당없음	30,000		

o 일일이용 : 4시간 기준

〔별표 2〕

###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50%	
만65세 이상의 사람	50%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증빙서류” 를 소지한 자	50%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자 및 그 가족	50%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자	50%	기증자
	10%	기증희망자
2종목 이상 동시 등록 시	각 종목별 10%	
단체입장 시(같은 소속이나 일행 20명 이상)	10%	
회원 장기 등록 시(3개월)	5%	

〔별표 3〕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반 환 사 유 별	반환비율(금액)
1회 입장 이용자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100%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이용개시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100%
	이용권 그날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0%
회원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미 사용일수 만큼 사용일수 연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00%
	프로그램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 제한 금액
	프로그램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순천시 공고 제2020-816호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 순 천 시 장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취지

-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 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관리자의 지정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일부 개정

### 3.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7.(금) ~ 2020. 5. 7.(목) (20일간)

###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7일까지 순천시(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738, FAX : 061-749-46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 1]

##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호를 제외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관리자 지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생략)</p> <p>② <u>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p> <p>1. ~ 3. (생략)</p>	<p>제11조(관리자 지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순천시 공고 제2020 - 821호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 순 천 시 장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취지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진로 결정 능력 배양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순천만잡월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 주요내용

- 목적, 위치, 정의(안 제1조 ~ 제3조)
-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9조)
-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6조)
- 보험가입 및 준용규정(안 제17조 ~ 제18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6. ~ 2020. 5. 6. (20일간)

###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순천시장(미래산업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4413, FAX : 061-749-4628)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진로 결정 능력 배양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순천만잡월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순천만잡월드는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1783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어린이체험관, 청소년체험관과 카페테리아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순천만잡월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휴관일”이란 순천만잡월드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순천만잡월드는 제4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순천만잡월드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개관시간을 변경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④ 순천만잡월드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거나 제4항 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순천만잡월드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면제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2. 단체이용객을 인솔하는 자(이용객 15명 당 인솔자 1인)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장하는 자
  4. 구급·비상 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근접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6. 직업진로와 관련된 행사 등 순천만잡월드 목적사업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는 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이용료의 50%를 할인 할 수 있다.
1.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3. 만 65세 이상자(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의 경우 주말이용료의 30%를 할인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반환)** 이용객이 환불을 요청 할 경우 체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액을 환불하고, 체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험이 시작된 이후에도 환불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이용 제한)** ①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폭력 등 체험관 질서유지에 해를 가하는 사람
4. 임신부, 노약자 등 순천만잡월드 이용에 안전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5. 공공질서유지 저해 및 시설물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6. 그 밖의 공익목적 수행 상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공지하며,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이용 제한, 제12조제1항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순천만잡월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순천만잡월드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손상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순천만잡월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을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 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5조(운영세칙)** 수탁자는 순천만잡월드 운영에 관하여 세부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순천만잡월드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해당연도 8월까지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운영 관리실적(예산 포함)을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상해 및 화재보험 등을 수탁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① 이용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직업체험시설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천만잡월드 시설 이용료(제5조 관련)**

## 1. 이용요금

(단위 : 원)

구 분		체험자	보호자	비 고
어린이 체험관 (5세~10세)	평일	18,000	8,000	
	주말·공휴일	21,000	9,000	
청소년 체험관 (11세~19세)	평일	12,000	-	체험추가요금 : 6,000/1개
	주말·공휴일	15,000	-	체험추가요금 : 7,000/1개

[비고] ▪ 15명이상 단체 인솔자 1명 무료 관람

- 청소년체험관 보호자 동반 희망 시 어린이체험관 보호자와 동일 요금 적용  
(20세 이상 성인은 체험관 이용 불가, 시설 입장 희망 시 보호자 요금 적용)

- 무료관람 및 요금감면은 입장 시 신분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자에 한함

##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공고 제2020-7호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 순 천 시 장

##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취지

- 인용 법령 조항 및 범명 개정
- 상위법령의 관리위탁 수의계약 및 수의계약에 따른 위탁 시 갱신에 관한 사항 반영

### 2. 주요내용

- “제4조”를 “제5조”로 개정(안 제1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인용 법령 개정(안 제2조, 제6조)
- 관리 운영 위탁 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항 신설(안 제7조)
- 법제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8조)
  - “1회에 한하여” → “한 번만”
- 수의계약에 따른 위탁 시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6. ~ 2020. 5. 6. (20일간)

####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6일 까지 순천시장(농식품유통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8676, FAX : 061-749-4680)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6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하고,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순천시가 건립한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제5조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 제6호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2. ~ 3. (생략)</p>	<p>제2조(정의) ----- ----- . 1.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 . 2. ~ 3.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탁) 시장은 APC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 5. (생략)</p>	<p>제6조(위탁) ----- ----- ----- ----- . 1.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 2. ~ 5. (현행과 같음)</p>
<p>제7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APC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p>	<p>제7조(수탁자 선정) ① -----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대하여는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u>」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p>
<p>&lt;신 설&gt;</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 ③ (생략)</p> <p>제8조(협약의 체결 등) ① ~ ② (생략)</p> <p>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u>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8조(협약의 체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한 번만 ----- -----.</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훈

령

순천시 훈련 제301호

순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4월 16일

순 천 시 장

붙임 순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 순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순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순천시 소속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대표”란 순천시장 또는 순천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노사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대표
2. 사용자대표가 지명하는 부서장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 1명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7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제 3 장 위원회의 운영

**제8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의 개최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근로자대표 또는 사용자대표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이 문서로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공개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원이 지명하는 자를 회의에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정족수)**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의결·결정사항)** 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결·결정의 효력)** 위원회의 심의·의결·결정사항은 법과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처우 금지)** 사업주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결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사대표의 합의에 따라 노사 동수로 구성된 중재 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2.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결과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결정된 사항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물 또는 자체 정례조회 전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의결·결정 사항의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에 기록하는 등 그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정의외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 제2항 관련)

## 20 년도 제 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장

대 리 인	사 업 장 명	
	소 속 부 서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 출 안 건

내 용	비 고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20 년 제 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원으로서 권한 일체를 위임하며, 또한 위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 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제출합니다.

20 . . .

위임자 : (서명 또는 날인)

## 관련 근거조항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제15조 관련)

## 20 년 제 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일시	20 년 월 일 ( : ~ : )	장소	회의구분	(정기, 임시)
참 석 위 원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대표	(서명)	근로자대표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안전관리자	(서명)	위 원	(서명)
	보건관리자	(서명)	위 원	(서명)
심 의 · 의 결 사 항	◆심의사항			
	◆의결사항			
기 타 사 항				

[별지 제3호 서식] (제16조 관련)

## 위원회 회의 안건 진행사항

연번	심의·의결 안건	토의결과
	개선진행사항	개선완료사항

# 고

# 시

순천시 고시 제2020-69호

##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동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 순 천 시 장

- 다 음 -

1. 하 천 명 칭 : 동천(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장
3. 점용자 주소 : 순천시 순천대2길 13 한전순천지사
4. 점용 목적 : 한전주 설치에 따른 점용
5. 점용 위치 : 용당동 706-2번지
6. 점용면적 및 시설현황
  - 가) 면 적 : 영구점용 0.196m<sup>2</sup>
  - 나) 시설현황 : 전주 1본
7. 점용 기간 : 영구점용(2020. 4. 9. ~ 2030. 4. 8.)

순천시 고시 제2020-70호

##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순천시 서면 선평리 7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 순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서면 선평리 7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 청 내 용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개설		
명 칭	도시계획도로(중로1-14호, 소로1-106호, 소로1-500호) 개설공사		
사업목적	공동주택 진입로 및 주변 도로 개설로 아파트 입주자 및 인근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자금조달	자기자본 14,200백만원	시 행 기 간	사업인가일 ~ 2022. 5. 31.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16,996m<sup>2</sup>  
(중로1류 - 연장 : 648m, 폭 : 20m/ 소로1류 - 연장 : 375m, 폭 : 9~1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 성명 : (주)코람코자산신탁[대표 정준호]
  - 나.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5. 실시계획인가 신청기한 : 고시일로부터 60일이내

순천시 고시 제2020-71호

##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상비마을 진입도로)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69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 순 천 시 장

### 1.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가. 교통시설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856	9	국지 도로	56	복성리 208-1	복성리 212-1	일반 도로	전남도고시 제2018-348호 (2018.11.29.)	
변경	소로	2	856	9	국지 도로	55	소로 3-507호선	복성리 212-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507	6	국지 도로	348	대로 1-2호선	소로 2-856호선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508	6~8	국지 도로	224	대로 1-2호선	소로 3-507호선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소로 2-856 호선	소로 2-856호선	•연장변경 - (L= 56m → 55m)	•복성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결정된 부출입구 구간 소로 2-856호선과 신규 신설된 소로3-507호선구간에 따른 선형 변경
-	소로 3-507호선	•노선신설 - (L= 348m, B=6m)	•기 개설된 상비마을 진입도로를 재정비하여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소로3류 신설
-	소로 3-508호선	•노선신설 - (L= 224m, B=6~8m)	•성가롤로병원 교차로간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소로3류 신설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순천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순천시 고시 제2020-72호

#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곡동)

순천시 조곡동 353-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 순 천 시 장

### 1.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가. 교통시설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가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45	8	국지 도로	1,189	중로1-6 조곡동 353	소로2-144 조곡동 688-4	일반 도로	-	-
변경	중로	3	151	12	국지도 로	479	중로1-6 조곡동353-22	소로2-145 조곡동652-1	일반 도로	-	-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45	중로 3-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변경</li> <li>- 폭 : 8m → 12m</li> <li>- 연장 : 479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취락지 및 공동주택 거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기존 진입도로 확장</li> </ul>

###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순천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순천시 고시 제2020-73호

### 도로명주소 고시 (신규·폐지)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신규/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 순 천 시 장

○ 도로명주소 :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1783 외 39건 (신규 28, 폐지 12)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749-552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므로, 공공기관에서 민원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시 사유	중천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대인리 1186-2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1783	20200416	20091013	여수에서 순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양시의 행정명칭 조합	
2 "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995-8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336 (기곡동)	20200416	20070517	기존 도로명인용 도로명 부여	
3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암곡리 264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건천길 119-9	20200416	20090729	자연미를 건천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4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1162-1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구표길 105	20200416	20070226	자연미를 구표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5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1149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구표길 107-3	20200416	20070226	자연미를 구표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6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713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도선길 391-3	20200416	20100429	자연미를 도선동(선동)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7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168-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복성길 8-51	20200416	20070208	자연미를 복성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8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591-1, 591-11, 591-17, 835-1, 835-3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3길 14-28 (조례동)	20200416	20100415	봉화산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하여 순차적으로 도로명 부여	
9 "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1079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비촌1길 96	20200416	20100415	자연미를 비촌의 진입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10 "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252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안길 18-31 (석현동)	20200416	20070205	자연미를 석현의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하여 순차적으로 도로명 부여	

고시 사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1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987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송곡길 85-1	20200416	20070207	자연마을 송곡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12	전라남도 순천시 남정동 393-1, 393-4	전라남도 순천시 신흥1길 5 (남정동)	20200416	20100415	자연마을 신흥의 안쪽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하여 순차적으로 도로명 부여	
13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동 23-2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길 6 (덕월동)	20200416	20070206	양율교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14	전라남도 순천시 인월동 875-1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길 316-78 (인월동)	20200416	20070206	양율교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15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왕대길 17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왕대길 17-1	20200416	20070208	자연마을 왕대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17에서 분할
16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우산리 1083-1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우산간동길 65	20200416	20100503	자연마을 간동을 인용 도로명 부여	
17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44	전라남도 순천시 원연향길 17 (연향동)	20200416	20070206	자연마을인 연향마을의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하여 도로명 부여	
18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삼청리 242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유경길 70	20200416	20070206	자연마을 유경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1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785-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울산길 114-3	20200416	20080109	옛 자연마을 울산의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2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78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울산길 114-5	20200416	20080109	옛 자연마을 울산의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고시 사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21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남강리 1125-3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저동길 124-44	20200416	20070203	자연미를 저동을 인용 도로명 부여	
22 "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622-25	전라남도 순천시 조비길 225-16 (석현동)	20200416	20070203	자연마을인 조비마을의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23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지본리 601, 594-1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길 46-7	20200416	20100503	청소골의 자연지명 인용 도로명 부여	
24 "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286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총민길 13	20200416	20070125	옛낙안군수 임경업장군의 시호인 총민을 인용	
25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길 16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길 169	20200416	20090910	자연마을 호두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167에서 분할
26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035-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길 7-9	20200416	20110719	옛 자연마을 매안 지명인용 순차적으로 부여	
27 "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981-1, 981-2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송곡서목골길 1	20200416	20190415	자연지명 송곡, 서목골 인용	
28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백록리 493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구구산길 24-1	20200416	20191010	자연지명 구구산 인용	
29 건물번호 폐지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336 (기곡동)		20200413	20070517	기존 도로명인용 도로명 부여	철거 후 신축
30 "	전라남도 순천시 승광면 구표길 105		20200402	20070226	자연미를 구표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철거 후 신축

	고시 사유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31	건물번호 폐지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3길 14-28 (조례동)		20200401	20100415	봉화산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하여 순차적으로 도로명 부여	철거 후 신축
32	"	전라남도 순천시 신흥1길 5 (남정동)		20200401	20100415	자연미를 신흥의 안쪽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하여 순차적으로 도로명 부여	철거 후 신축
33	"	전라남도 순천시 원남윗길 51 (기곡동)		20200413	20070206	옛 고을 부사의 주된 행차 노선의 윗길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철거 후 신축
34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유경길 70		20200331	20070206	자연미를 유경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철거 후 신축
35	"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길 172 (풍덕동)		20200414	20100503	자연지명 하풍의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철거
36	"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길 8 (풍덕동)		20200414	20100503	자연지명 하풍의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철거
37	"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길 4 (풍덕동)		20200414	20100503	자연지명 하풍의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철거
38	"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길 6 (풍덕동)		20200414	20100503	자연지명 하풍의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철거
39	"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길 18 (풍덕동)		20200414	20100503	자연지명 하풍의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철거
40	"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길 32 (풍덕동)		20200414	20100503	자연지명 하풍의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철거

순천시 낙안면 고시 제2020-3호

##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 낙 안 면 장

- 다 음 -

1. 하천 명칭 : 상사천(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3. 점용자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4. 점용 목적 : 『낙안~상사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교량 재가설
5. 점용 위치 :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 958번지 외 3필지  
(인접 : 818-19, 8-6)
6. 점용 면적 : 일시점용 1,125㎡ / 영구점용 1,708㎡
7. 점용 기간 : 일시점용 2020. 4. 13. ~ 2024. 12. 31.  
영구점용 2020. 4. 13. ~ 존치일까지(영구)

순천시 주암면 고시 제2020-1호

## 하천점용허가고시 (주암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 주 암 면 장

- 다 음 -

1. 하천 명칭 : 주암면(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노\*\*
3. 점용자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황계로 \*\*\*\*\*
4. 점용 목적 : 경작
5. 점용 위치 :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674-38번지
6. 점용 면적 : 350㎡
7. 점용 기간 : 2020. 4. 6. ~ 2029. 12. 31.

순천시 주암면 고시 제2020-2호

## 하천점용허가고시 (주암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 주 암 면 장

- 다 음 -

1. 하천 명칭 : 주암면(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최\*\*
3. 점용자 주소 : 순천시 조례못등길 13, \*\*\*동 \*\*\*호  
(조례동, 부영아파트)
4. 점용 목적 : 경작에 따른 점용
5. 점용 위치 :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674-38번지
6. 점용 면적 : 40m<sup>2</sup>
7. 점용 기간 : 2020. 4. 8. ~ 2029. 12. 31.

순천시 주암면 고시 제2020-3호

## 하천점용허가고시 (주암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 주 암 면 장

- 다 음 -

1. 하천 명칭 : 주암면(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조\*\*
3. 점용자 주소 : 순천시 주암면 원가마길 61
4. 점용 목적 : 경작에 따른 점용
5. 점용 위치 :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674-38번지
6. 점용 면적 : 40m<sup>2</sup>
7. 점용 기간 : 2020. 4. 9. ~ 2029. 12. 31.

순천시 주암면 고시 제2020-4호

## 하천점용허가고시 (주암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 주 암 면 장

- 다 음 -

1. 하천 명칭 : 주암면(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조\*\*
3. 점용자 주소 : 순천시 주암면 월갈마길 65
4. 점용 목적 : 경작에 따른 점용
5. 점용 위치 :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674-38번지
6. 점용 면적 : 40m<sup>2</sup>
7. 점용 기간 : 2020. 4. 14. ~ 2029. 12. 31.